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43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12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태수, 박강산, 박영한, 박칠성,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3.29.)으로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혼이민자를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시는 어린이·노약자 및 <u>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u>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p>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 ----- <u>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u>---</p> |

문서번호

2022101400000018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성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0.10.14.

회신일 : 2020.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조항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 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조항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 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여 명시한 사안으로 취약계층 소지자 보호를 위한 지원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는 어려움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확대에 의한 보조금 지원액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결혼이민자 지원범위와 사업 수행방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 지므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